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9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최수진・이상식・강선영

서지영 · 김예지 · 임이자

성일종 • 박준태 • 신성범

조경태 · 인요한 의원

(11인)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1)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사회·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행 법령상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¹⁾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3조)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 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확산되고 연구자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활동의 유형, 연구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하여 성과확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연구개발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근거를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연구개발성과 확산사업의 추진 근거와 더불어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 업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양도 및 출자 등, 연구자등에 대한 휴·겸직 및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운영 등에 대한 참여를 명시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연구성과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 기여자의 범위, 연구개발기관과 외부기여자와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 의무 등 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겸직, 주식 등 대가의 수령,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 성과확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에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확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2.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 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 3. "성과확산"이란 연구개발성과의 가치를 높이거나 연구개발성과의 가치가 미치는 효용 범위를 인적·물적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성과 기반 학술활동 및 후속연구
 - 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증 및 인증
 - 다.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출자 등 사업화

- 라. 산학연 협력 및 교류 활동
- 마. 시설·장비·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적 연구개발성과(이하 "인프라 성과"라 한다)의 활용
- 바. 연구성과창업 및 창업 지원
- 사.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를 유·무형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4. "연구성과창업"이란 연구개발성과가 기반이 된 창업을 말하며, 연구성과창업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을 "연구성과창업기업"이라 한다.
- 5. "연구자창업"이란 제4호에 따른 연구성과창업 중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연구자 등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성과창업 기업의 창업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자창업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을 "연구자창업기업"이라 한다.
- 6. "연구성과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이전 및 출자, 창업 등을 통해 발생한 기술료 외의 기타 수익을 말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 · 지속적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
 - 2. 유형별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확산사업의 추진
 - 3.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활동의 지원

- 4. 연구성과창업 활성화 및 관련 제도의 마련
-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그 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 제5조(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확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성과확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성과확산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5. 연구성과창업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를 거쳐 성과확산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에 관한 세부활동 및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성과확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확산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성과확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성과확산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연구개발성과 기반 학술활동
- 2.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 3. 인프라 성과의 활용 관리
- 4.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력
- 5.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구축 및 공개· 활용
- 6. 그 밖에 성과확산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과확산에 관한 전문인력 (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성과확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 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과정에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과정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6조제 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할수 있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의 배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을 설치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성과확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기관의 학술활동 지원

- 2. 연구개발기관의 후속연구 지원
- 3. 연구개발성과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 4. 연구개발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지원
- 5. 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 성과 확산 지원
- 6. 성과확산을 위한 인력교류 지원
- 7. 그 밖의 성과확산과 관련된 활동 지원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확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성과확산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성과 확산 사업의 기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2. 그 밖에 성과확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제11조(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사업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화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성과창업

- 제12조(연구성과창업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2. 연구성과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 3.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또는 출자 등
 - 4. 연구성과창업 준비, 창업 초기 및 중기 등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 5. 연구성과창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성
 - 6. 연구성과창업 생태계 조성
 - 7. 연구성과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업문화 확산
 - 8. 연구성과창업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시책을 반영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창업을 할 수 있다.

- ④ 연구성과창업에 관여하는 자는 연구성과창업을 통하여 연구자등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이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자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창업기업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양도나 전용실시권 허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연구자등의 휴·겸직) ① 연구자등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창업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창업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5년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연구자창업을 할 때 해당 연구자등이 연구자창업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그가소속한 기관에서 재직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 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 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이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그 겸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15조(연구자등의 연구성과창업기업 참여 등) ① 연구자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해 연구성과창업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문
 - 2. 후속 연구개발 또는 공동 연구개발에의 참여
 - 3.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의 참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② 연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여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주식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출자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성과창업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자금 등을 출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출자, 이전 또는 창업 등을 통하여 발생한 연구성과수익 중 기술료 외의 기타 수익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연구성과창업기업에 대한 출자
 - 2. 연구성과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출자
 - 3. 연구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의 출자
 - 4. 연구성과수익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등에 대한 보상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성과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출자와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성 과창업기업으로부터 해당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성과창업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부서 등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배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 인 성과확산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창 업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또는 관련 단체(이 조에서는 "연구개발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등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및 보상 등

- 제19조(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수익을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출자 및 이전, 창업 등에 기여한연구자등에게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 등으로 지급할 수있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기여자의 범위, 수익 분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외부기여자에 대한 대가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또는 민간의 관련 분야 전문 가 및 전문기관(이하 "외부기여자"라 한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기여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으로 외부기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외부기여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 제14조에 따른 연구자등의 경직, 제15조에 따른 연구자등의 대가 수령, 제19조에 따른 연구

자등의 연구성과수익 수령 등 성과확산 관련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단서의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 제22조(사후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에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 제10

- 조,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 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위임·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